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 . . (제 회)	

5 · 18 민 주 유 공 자 예 우 및
단 체 설 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등록신청 시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6조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호(종전의 제2호) 전단 중 “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”을 “같은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5·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.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. 이 경우 생활수준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의4를 준용한다.
4. 제3호에 따라 선순위 유족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선순위유족에 관한 경과조치)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유족으로서 제52조에 따른 고궁등의 이용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은 같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선순위유족으로서 보상 등을 받는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등록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5·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(先順位) 유족(선순위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)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	제6조(등록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, 5·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.</u>	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<u><삭 제></u>
2. <u>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</u>	2. <u>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5·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.</u> 1. <u>같은</u> ----- -----.

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.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를 준용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삭 제

③ ~ ⑤ (생 략)

--.
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. 이 경우 생활수준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의4를 준용한다.

4. 제3호에 따라 선순위 유족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42